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9. 16 선고 2019나51749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9. 16 선고 2019나51749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41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최유덕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박홍조, 허경아

변론 종결2020. 7. 15.

판결 선고2020. 9. 16.

제1심판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41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의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를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와"로

경정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9,343,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하고 별지는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의 대표이사로서 C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을 뿐 피고 개인자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갑 제2, 3, 5,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C와 함께 인도명령이 집행된 2019. 5. 9.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2018. 3.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C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도명령을 받았다(위 법원 E 부동산인도명령). 그러나 위 인도명령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C와 함께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되지 아니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18. 7. 1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도명령을 받았다(위 법원 F 부동산인도명령). 피고는 위 인도명령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에 항고하였는데, 2018. 10. 19. 춘천지방법원에 '피고는 C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 춘천지방법원은 2018. 12. 10. '피고도 C의 대표이사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실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18라89). 피고는 위 항고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 21. 피고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9마10).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의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와"로 경정한다.

재판장판사박재우

판사진영현

판사양승우